

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!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

고용안정지원제도

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!

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근로자 증가가 예상이 된다

■ 지원대상

교대제개편 · 실근로시간단축 · 일자리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

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대규모기업 월40만원
[임금감소액 보전]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월40만원
[설비투자비 지원]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억원
[설비투자비 용자] 최대 50억원

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근무체계 개편 ·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, 대규모기업 월30만원

성장유망업종, 지역특화산업,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성장유망업종, 지역특화산업, 국내복귀기업으로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(단, 국내복귀기업은 중견기업 월30만원)

석·박사 등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학력 · 경력 ·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해당 분야에 근무하게 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



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신규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, 대규모기업 월30만원

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!

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임금증가액] 최대 월40만원
[간접노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월20만원

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임금감소액] 최대 월40만원
[대체인력 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, 대규모기업 월30만원
[간접노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

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

■ 지원대상

시차출퇴근제 · 재량근무제 · 선택근무제 · 재택 · 원격 근무를 도입하여 일 · 가정양립 환경개선을 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설비투자비 지원]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,500만원
[설비투자비 용자]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4,000만원
[간접노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월40만원



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하다

■ 지원대상

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· 육아휴직 ·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

■ 지원한도

[인건비 · 대체인력인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, 대규모기업 월30만원
[간접노무비]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20만원(육아휴직은 월30만원), 대규모기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10만원(육아휴직은 미지원)

고용유지지원금 경영사정이 어렵지만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!

경영 사정이 어렵지만 감원 없이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

■ 지원대상

경기변동 ·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· 휴련 ·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

■ 지원한도

[사업주지원]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1/2~3/4 지원(1일 상한액 한도 적용)

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 · 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%미만으로 주면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

■ 지원대상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·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 조치한 경우 (심사위원회에서 결정)

■ 지원한도

[근로자지원]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평균임금 50% 이내 지원(1일 상한액 한도 적용)
[사업주지원] 직업능력개발향상조치비 1인당 최대 월10만원



고용노동부

기업별 상세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센터 [1350]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